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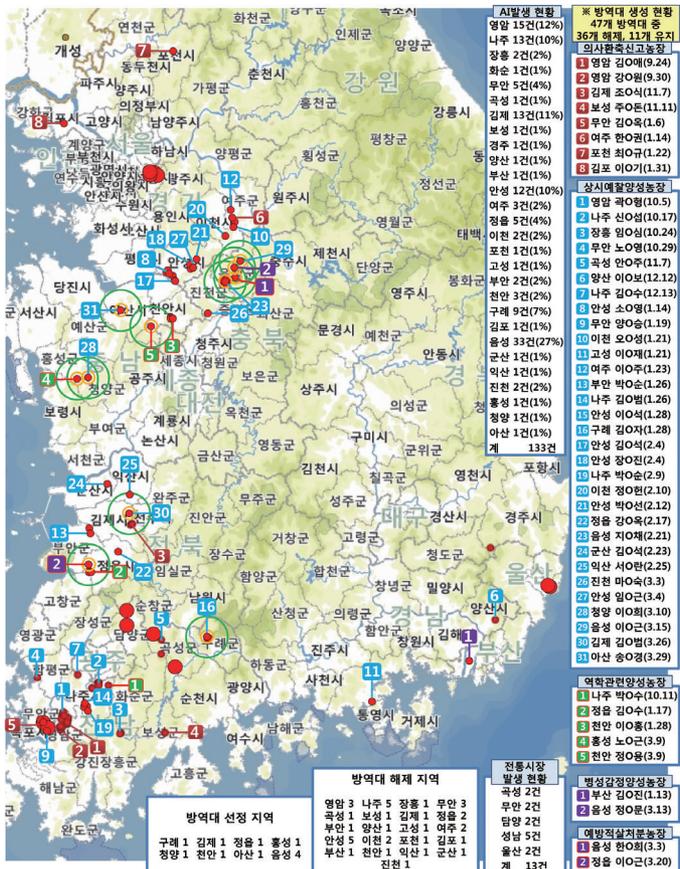
AI 방역을 위한 주의사항, 이것만은 꼭 지키자!

지난해 9월 4일 이동제한 조치 해제 후 9월 24일 전남 영암 육용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시가 재 발생하였다. 최근에는 전북 김제, 경기도 안성에서 고병원성 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AI 조기증식을 위해 중앙정부, 방역당국, 지자체, 생산자들이 뚝뚝 뭉쳐 농장차단방역을 실시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차단방역에 소홀하면 전국으로 시가 다시 확산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또한, 미국, 홍콩, 팔레스타인, 부탄 등에서 고병원성 시가 발생했다는 이데의 긴급보고가 있었다. 고병원성 시 발생에 따른 농가 지침사항을 알아보자. - 편집자주 -

1. 야생철새 관련 농가방역실시 요령

- 철새도래지, 저수지, 하천, 습지, 인근 논·밭 등 철새 출몰지역 출입 금지
- 축사·사료보관시설 그물망 설치, 문단속 철거 등 철새 등 야생조류 접근 차단
- 농장울타리 밖, 축사외부 등 생석회 살포 등 쥐 등 야생동물 유입방지
- 사람·차량 출입시 소독실시, 출입자기록부 기록 등 외부인 농장 출입 통제
- 야생조수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사료저장통 주변 떨어진 사료 즉지 제거 및 주기적 소독
- 매일 아침 철새의 축사유입 여부 확인 및 분변제거, 소독 실시
- 축사 출입시 전용신발(장화) 사용, 모든 축사입구마다 소독조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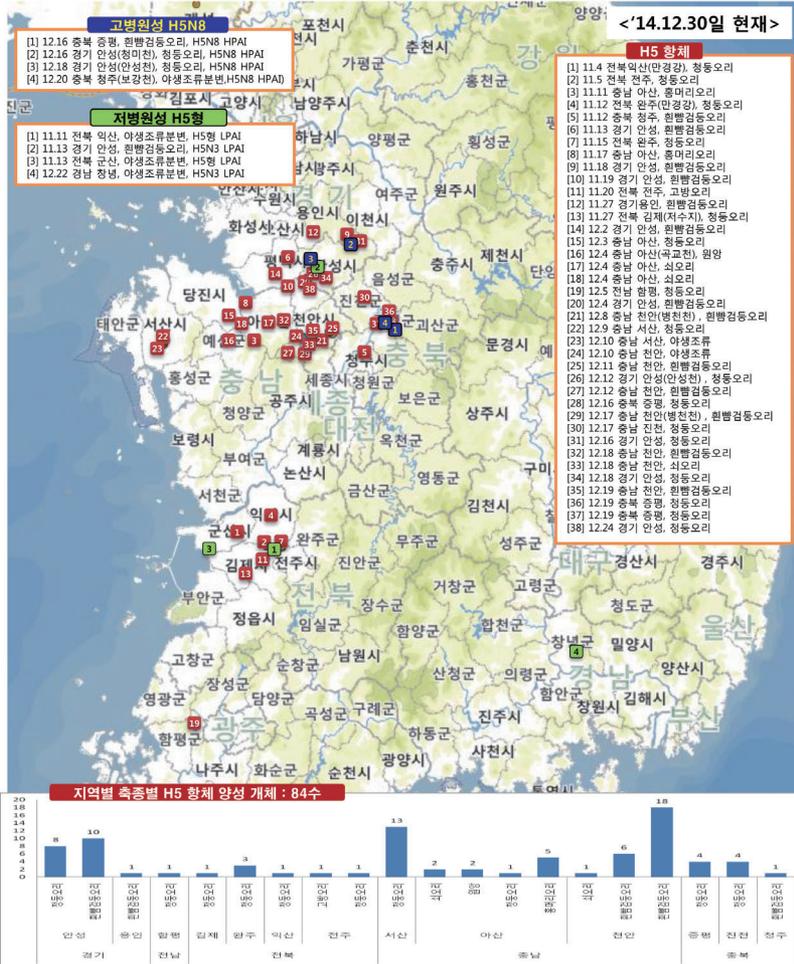
'14년 9월 24일 이후 AI 양성 농장현황('15. 4. 15 기준)



<그림1> 고병원성 AI 양성농장 현황('14. 9. 24~'15. 4. 15)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야생조류 H5형 AIV 및 항체 검출 현황 [14.9월 이후]



자 발생국가를 체류·경유하여 입국시 해당 국가의 축산농가 또는 축산시장을 방문한 경우 ‘여행자 세관 신고서’ 해당항목에 기재하기 바라며, 2011년 7월 25일부터는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를 작성하고, 검역관의 소독, 검사 등 조치를 따라주기 바란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3. 축산관계자 공항만 출입국 신고 및 소독 안내(☎ 1588-9060)

축산관계자는 2011년 7월 25일부터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출국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출국 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축산관계자 출국 신고시스템’에서 출국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국가를 체류·경유하여 입국할 때에는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를 작성하

<그림2> 야생조류 H5형 AIV 및 항체 검출 현황('14. 9 ~ 12월)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철새 AI 위험 알림 및 주변 야생철새 관찰 시 다시 한 번 소독 등 방역사항 점검 및 조치

2. 해외여행자 공항만 입국 신고 및 소독 안내(☎ 1588-9060)

해외여행자는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

표 1. 축산관계자의 범위 (*동거가족 :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사실상 거소를 함께 하는 가족 포함))

가족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가족 소, 산양, 면양, 돼지, 닭,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를 사육하는 자	사료를 판매하는 자 사료제조업을 등록한 소유자 및 판매업자와 고용된 자
가족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고용계약 체결 유·무와 상관없이 가족의 소유자등에게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가족방역사 가족방역사로 위촉을 받은 자
수의사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	가족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자
가족인공수정사 가족인공수정사 면허를 받은 자	가족시장의 종사자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관리하는 가족시장의 종사자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자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동물용의약품수입판매업자,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소유자와 고용된 자	원유를 수집·운반하는 자

표 2.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국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30개국)	아시아 (16개국)	네팔, 대만, 라오스,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북한,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캄보디아, 팔레스타인, 홍콩 Nepal, Chinese Taipei, Laos, Myanmar, Bangladesh, Vietnam, Bhutan, Korea(Dem. People's Republic), Israel, India, Indonesia, Japan, China(People's Rep. of) Cambodia, Palestinian, Auton. Territories, Hong Kong
	아프리카 (4개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이집트 Nigeria, South Africa, Libya, Egypt
	유럽 (7개국)	네덜란드, 독일, 러시아, 불가리아, 영국, 이탈리아, 헝가리 Netherlands, Germany, Russia, Bulgaria, United Kingdom, Italy, Hungary
	아메리카 (3개국)	멕시코, 미국, 캐나다 Canada, Mexico, USA

출처 : OIE(세계동물보건기구)

고, 검역관의 소독, 검사 등 조치를 따라주기 바란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4. 해외여행자 및 축산관계자 유의사항

☞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를 여행한 경우에는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 방문 금지

☞ 귀국한 후에는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자제

☞ 해외여행 중에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 샤워 등 개인위생 관리 철저

☞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 반입 자제, 부득이 가져온 경우에는 도착 공항 및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 **양계**